

<붙임 2>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안)

환경부 고시 제2017-10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6-134호, 2016. 7. 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3호에 “또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를 추가하고 기존 제4호를 삭제 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인증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인증기준) ④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프리미엄 환경표지 표시에 관한 기준항목이 없는 대상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 환경성을 더욱 개선한 인증제품 또는 인증을 받으려 하는 제품이 프리미엄 환경표지 표시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4의 프리미엄 표시를 할 수 있다. 인증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환경성 개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의할 수 있다.

1. 대상제품의 ‘환경 관련 기준’에 설정된 모든 정량적 상한 기준의 30% 이하
2. 대상제품의 ‘환경 관련 기준’에 설정된 모든 정량적 하한 기준 및 적부 판단 기준보다 정량적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

제6조(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등) 제1항 중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5호”를 “환경표지 도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3호”로 하고, “친환경 제품명”, 인증사유 및 환경성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대상제품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재검토키한) 중 “2019년 7월 8일까지로”를 “2019년 7월 8일까지로”로 한다.

별표 1 중 제2호 나목에 “EL224. 양변기용 부속”을 삭제하고, 제3호 다목에 “EL329. 유아용 이동·보호용품”, “EL330. 디아이와이용 페인트”를 신설하고, 제4호에 ‘라. 기타 기기류’를 신설하고, 제4호 라목에 “EL491. 가스레인지”를 신설하고, 제6호 나목에 “EL657. 적층형 이동식 안전작업대”를 신설하고, 제8호에 “EL805. 세탁 서비스”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토너 카트리지 EL104:2016”, “문구 EL108:2013”, “디지털 프로젝터 EL146:2014”, “가구 EL172:2015”, “LED 등기구 EL210:2015”, “페인트 EL241:2014”, “투수 콘크리트 제품 EL245:2012”, “건축용 실링재 EL259:2016”, “다목적 세정제 EL305:2013”, “방향제 EL322:2012”, “유아용 기저귀 EL324:2012”, “발포 합성수지제 매트 EL327:2016”, “침대 EL483:2012”, “탈취제 EL608:2012”, “블록·타일·판재류 EL745:2008”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양변기용 부속 EL224:2013”을 삭제하고, “유아용 이동·보호용품 EL329:2017”, “디아이와이용 페인트 EL330:2017”, “가스레인지 EL491:2017”, “적층형 이동식 안전작업대 EL657:2017”, “세탁 서비스 EL805:2017”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제품은 잔여 인증기간을 인정한다.

②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다목적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페인트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고시에 부적합한 경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이 고시에 적합한 경우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종료한다.

④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